

충청북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6. 4. 9

나. 회부일자 : '96. 4. 9

3. 제안이유

-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지방도·소매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직명 변경

4. 주요골자

-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심의기능 추가
 -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에 대한 권고기능 삭제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직명 변경

- 위원장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
- 간사 상정과정을 경제과장으로 개정

5. 검토의견

충청북도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운영 조례중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국·과의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능에 있어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에 대한 심의기능만 되어 있는 것을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의 개설허가로 하여 도매센터의 개설허가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상정과장을 농정국장, 공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경제과장으로 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상 직명과 동일하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시료됨.